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1. 본 해설서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하 「지침」)에 대한 해설서이자,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실무담당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를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 및 관리 업무 안내서입니다.

2. 「지침」의 개정(개정일 : 2023. 1. 1.)과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이하, 만료저작물)의 새로운 표시 기준(공고일 : 2024. 1. 1.)**을 반영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정보와 만료저작물의 관리에 대한 업무 안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3. 기존 지침 해설서에 없던 업무 안내 사항과 참고 서식, 자료 등을 보완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업무 안내 사항 및 관련 자료의 마련·발굴에 따라 계속 수정·보완할 예정입니다.

4. **본 해설서는 공공누리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08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문 13
공공저작물 개방 및 관리 업무 한 눈에 보기 17
공공저작물 자유이용대상 체크리스트 18

Ⅱ. 지침 해설

제1장 총칙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란(지침 제1조) 24
2. 지침 적용 기관의 범위(지침 제2조) 26
3. 용어의 정의(지침 제3조) 28
4. 공공저작물 관리, 제공, 이용의 기본 원칙(지침 제4조) 32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1. 저작권 귀속(지침 제5조) 36
2. 저작권 등 권리처리(지침 제6조) 38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1. 담당자 지정 및 공표(지침 제7조) 44
2.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지침 제8조) 48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1. 공공저작물 개방(지침 제9조) 54
2. 공공저작물의 출판과 발행(지침 제10조) 56
3. 공공누리의 적용 (지침 제11조) 57
4. 제공비용(지침 제12조) 66
5.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지침 제15조) 66

제5장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1. 이용료 징수(지침 제13조) 70
2. 공공저작권의 신탁(지침 제14조) 72

제6장 공공저작물 관리 지원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6조) 78
2. 공공저작권 저작권 관리 진단(지침 제18조) 80
3.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지침 제17조) 83

제7장 공공저작물 이용
1.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지침 제19조) 86
2. 출처의 명시(지침 제20조) 87
3.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 금지 (지침 제21조) 88
4. 공공저작물 제공·이용 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지침 제22조) 89

부록

1. 참고서식 92
2. 참고자료 107
3. FAQ 116

Ⅰ. 들어가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08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문 13

공공저작물 개방 및 관리 업무 한 눈에 보기 17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대상 체크리스트 18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54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2137호, 2013. 12. 30. 공포, 2014.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6호(2019.1.31.)를 일부개정하여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 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 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제5조(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 제공 권고

4. 공공저작물의 관리·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저작물 이용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공누리(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 - 0449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업무상 창작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이하 "공공저작물"이라 한다)을 「저작권법」제24조의2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에 따라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고 통일성 있는 표시와 조건을 사용하여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저작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

1. 명칭 및 기본 표시 도안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의 명칭은 "공공누리"로 하고, 영어로는 "KOGL(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이라고 하며, 공공누리를 상징하는 기본 표시 도안은 다음과 같다.

(영어 : / 영한 :)

2. 공공누리의 종류와 표시 도안

공공누리는 출처(저작권자) 표시를 기본적 의무로 하여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4가지 유형별로 공공누리 심벌마크 및 이용허락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 출처 표시]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2유형 : 제1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유형 및 심벌마크	이용허락의 범위
[제3유형 : 제1유형 + 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유형 : 제1유형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공공누리 표시 위치

공공기관등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공누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가. 온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각의 공공저작물에 대해 심벌마크를 표시하고 우측에 공공누리 이용에 대한 설명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오프라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공공누리 심벌마크의 위치와 크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공공누리 이용조건

가. 공공기관등은 공공누리를 적용한 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저작자 표시의무, 이용이 제한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면책,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등 이용조건을 적절한 방법(예, 심벌마크와의 하이퍼링크)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나. 공공누리 유형별로 이용조건은 붙임과 같다.

다. 공공기관등은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 변경 등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사실을 즉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변경 전 공공누리 표시를 신뢰하여 이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제3자의 권리침해가 문제되지 않는 이상 계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안내

공공기관등은 이용 편의를 위해 관리하는 저작물 중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을 아래와 같이 표시하여 안내할 수 있으며, 공고일 이전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만료저작물 표시(만료저작물 자유이용)를 사용하여 공개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은 아래 표시가 적용된 것으로 본다.

OPEN 자유이용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영어 : OPEN FREE Free use of expired public works / 영한 : OPEN FREE 자유이용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붙임 1 : 공공누리 제1유형(저작권자 표시)의 이용조건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영어 : OPEN BY 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영한 : OPEN 출처표시 KOGL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출처 표시 의무

가.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이를 제공한 기관명과 작성자(해당 저작물에 표기된 바에 따름), 공표된 연도(발행일 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나.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라. 자료를 제공한 공공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료인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 ○○○'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저작물은 '기관명 ○○○,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저작인격권의 존중

공공저작물을 변경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변경 이용의 예시〉

①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연구보고서의 연구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③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등

3. 공공기관의 면책

가.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붙임 2 : 공공누리 제2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3 : 공공누리 제3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공공저작물의 내용을 변형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상업적 활용 여부에 관계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붙임 4: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영어 : / 영한 :)

위 공공누리에 따라 이용자는 다음에서 제시하는 조건을 준수할 경우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1.~4. (제1유형과 동일)

공공저작물 개방 및 관리 업무 한눈에 보기

Ⅰ. 관리

1. 기관 내부 관리 기준 (지침, 연간 계획 등) 수립 → 지침 제4조

2.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및 공표 → 지침 제7조

3. 저작권정책 게시 → 지침 제9조

4.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 지침 제8조

Ⅱ. 취득 및 제공

1. 저작권 귀속 및 권리처리

- 업무상저작물 작성 및 공표 → 지침 제5조
- 계약에 의한 저작권 전부 또는 일부 취득 → 지침 제6조
- 제3자(공동저작권자)로부터 공공누리 적용 동의 확보 → 지침 제6조

2. 공공누리 적용 (유형마크 부착)

- 공공누리 유형 선택 → 지침 제11조
-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 지침 제11조

3. 공공저작물 개방 (공공누리 연계)

- 기관 홈페이지 통한 제공 → 지침 제9조
- 공공누리 누리집에 연계 → 지침 제9조

4. 공공저작물 제공 중단

- 이용자의 이용조건 (이용약관) 준수 요청 → 지침 제19조
- 제공 중단 및 침해 대응 → 지침 제15조

Ⅲ. 개방지원센터 이용

1. 개방지원서비스 이용 → 지침 제16조

2. 포상 참여 → 지침 제16조

3. 교육/연수 이수 → 지침 제7조

4. 공공저작권 신탁제도 이용 → 지침 제14조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대상 체크리스트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물이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보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비보호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허락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30쪽 참고

  ※ 저작권 보호기간 50쪽 참고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별도의 허락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49쪽 [만료저작물 표시 기준] 참고

-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원시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해야 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36쪽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참고

  ※ 양도 등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방법 38~41쪽 참고

- 공공누리 적용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별도의 이용허락 필요)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누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공공누리 적용 예외 사유 58쪽 참고

적합한 공공누리 유형(제1유형~제4유형)을 선택합니다.

-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이 가능한 저작물(아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
  -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
  - 저작재산권 일부만 보유하였으나,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 공공누리 제2~4유형 적용이 가능한 저작물(아래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
  -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였으나, 변경 또는 상업적 이용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지자체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후 제2~4유형 부착 가능 59쪽 참고
  - 저작재산권 일부만 보유하였으나, 공공누리 제2~4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저작권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공공저작물의 권리정보를 확인하고,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저작권정보를 기록합니다.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정보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관리합니다.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저작권정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 저작권정보 관리 방법 48쪽 참고

※ 만료 저작물 표시 방법 49쪽 참고

Ⅱ. 지침 해설

제1장 총칙 24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36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44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54

제5장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70

제6장 공공저작물 관리 지원 78

제7장 공공저작물 이용 86

제1장
총칙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란(지침 제1조) 24
2. 지침 적용 기관의 범위(지침 제2조) 26
3. 용어의 정의(지침 제3조) 28
4. 공공저작물 관리, 제공, 이용의 기본 원칙(지침 제4조) 32

제1장 총칙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이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의2, 제24조의2 및 제134조와 법 시행령 제1조의3,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침의 목적

-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체단체 및 공공기관에 공공저작물의 취득 및 제공·관리에 대한 세부항 제시
- 공공저작물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는 이용원칙 및 기준 제시

2) 지침의 법적근거

- 「저작권법」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 **저작권법 제2조의2(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 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저작권법」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 **저작권법 제134조(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①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확대 방안
2. 공공저작물 권리 귀속 명확화 등 이용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공공저작물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공공저작물 자유이용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하 "중앙관서의 장등"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5조의8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9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해당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공공저작물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체결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 **저작권법 시행령 제73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한 사업)** ① 법 제134조제1항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 구축사업
3. 표준계약서 개발 등 이용허락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
4. 저작물의 공정이용기준 마련을 위한 지침 제정 및 권장사업
5. 저작물 등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사업
6.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 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2. 지침 적용 기관의 범위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하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에서도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국가기관

※ 저작권법상 국가/지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 없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와 제34조에 따른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 저작권법상 국가/지자체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 없음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1.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2. 시, 군, 구

② (이하 생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0조(보조기관)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경우, 알리오(ALIO: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www.alio.go.kr)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 제16호 나목에서 마목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등도 본 지침을 준용하여 시행 가능.(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참조)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에 시행 사실 고지해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유연하게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란 법률에 따른 기관임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3. 용어의 정의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3. "자유이용"이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누리"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1) 공공기관 등

-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 포함)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법 제2조)**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 시군구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0조(보조기관)**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시장형 공기업(자산규모가 2조 원 이상이고, 총 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85% 이상인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 기타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

2) 공공저작물

-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자유이용 대상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이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권리자와의 협의를 통해 자유이용 개방 가능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참조)

· 저작재산권

저작권	
저작인격권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 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	**저작재산권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권리)**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1조~제13조	**저작권법 제16조~제22조**

· 전부 또는 일부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7가지 권리 중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 취득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은 경우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 권리만을 양도받은 경우
(저작재산권 전부 양도 계약을 했으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포함)
ex.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는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호)

구 분	내 용
저작물의 예시 (저작권법 제4조)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원저작물 + 창작성 = **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에 번역·편곡·변형·각색 등을 한 새로운 창작물
편집저작물 (저작권법 제6조)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으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며,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편집물 :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함)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함 데이터베이스 :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

*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려면, 원저작물, 소재 저작물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등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거나 동의를 받아야만 함

[참고] 비보호 저작물

비보호저작물 (저작권법 제7조)	비보호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함 1. 헌법 · 법률 · 조약 · 명령 ·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 공고 · 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 · 결정 ·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 · 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3) 자유이용

- 지침 상의 '자유이용'이란 이용자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별적인 이용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

※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공공저작물의 경우, 납세자인 국민의 비용인 국가 또는 지장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작성되므로, 비용부담자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출처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3. 6.)

4)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 표준 라이선스

·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른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한 표시 기준

공공누리 이용허락조건			
기본표시	이용허락조건표시		
	출처표시(기본조건)	상업적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공공누리 심벌마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출처 표시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가능
	[제2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 표시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 가능
	[제3유형] 출처 표시+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제4유형]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 표시 - 상업적 이용 금지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하여 이용 금지

⊙ 13쪽~16쪽 [공공누리 공고문] 참고

4. 공공저작물 관리, 제공, 이용의 기본 원칙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 관리 원칙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활용되어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

▣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지침을 수립한 기관 검색 가능

[참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 부록 92쪽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안)] 참고

〈환경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

[시행 2014.12.26.] [환경부훈령 제1121호, 2014.12.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조의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문화체육관광부) 제4조의3에 의거, 환경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민간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참고]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계획 개요 ⊙ 부록 96쪽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계획(안)]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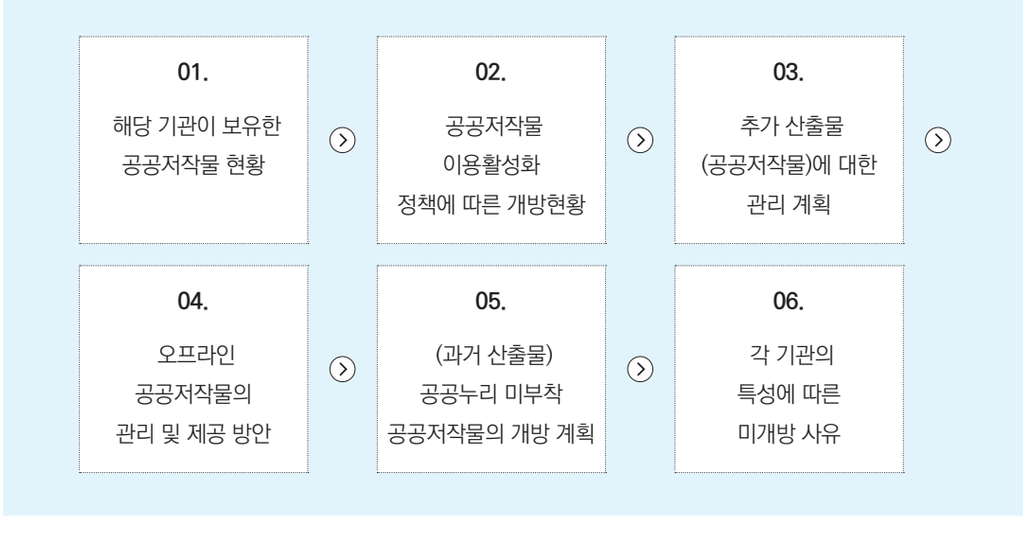

2) 공공저작물 제공 원칙

- 원칙적으로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자유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 '변경' 또는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원칙
  - ·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여 자유 이용하는 경우, 번역·편곡·개작 가능(저작권법 제36조), 영리적 이용 허용(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참조)

※ [참고] 공공데이터법상 '공공데이터'의 개념과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간의 중첩 영역이 있음. 저작권법과 공공데이터법을 동시에 고려한 업무처리 필요

▣ **저작권법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4조의2,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 ·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공저작물 이용 원칙

- 공공저작물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 준수 및 성실히 이용 ⊙ 86쪽~88쪽 참고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1. 저작권 귀속(지침 제5조) 36

2. 저작권 등 권리처리(지침 제6조) 38

제2장 공공저작물 취득

1. 저작권 귀속

제5조(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공기관 등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1) 공공저작물

–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공표된 업무상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1.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2.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
3.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4.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저작권법 제2조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공공기관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하여 기획할 것	⊙	· 저작물 작성에 대한 구체적 지시 또는 승낙이 있거나 통상적인 직무인 경우
공공기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	· 파견근로자 또는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고용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포함 · 고용관계는 보수지급 여부와는 상관없음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작성될 것	⊙	· 근무 시간 및 장소와는 상관없이 저작물 작성 자체가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 업무상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작성하더라도, 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작성인 경우 불인정

공공기관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명의' (이름 또는 기관명)	⊙ · 작성자의 명의로 기재된 경우 불인정이 원칙이나, 업무분담과 책임소재를 위해 기재된 경우 인정
	'공표'되는	⊙ · 아직 미공표 저작물이라도 공표할 예정인 경우 업무상 저작물로서 인정되지만,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에 한함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함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 ·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 **서울중앙지법 2006.10.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2]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면 법인 등의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명령받은 것뿐만 아니라 고용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업무로서 기대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 등의 기획하에 저작물을 작성하고 그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된 경우, 저작자의 기명저작물이 아닌 이상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아닌 법인 등에게 귀속하는바, 여기서의 '일반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인 경우도 포함한다.

–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 취득한 저작물

·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 양도계약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

→ 양도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전부 양도 계약을 했으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포함)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 4. 22.〉

2) 공공저작권·저작물의 관리

– 공공기관 등이 관리주체에 해당

2. 저작권 등 권리처리

제6조(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공공기관 등이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창작을 위한 의뢰계약서 또는 공동창작을 위한 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저작권의 귀속관계 명확화

- 제3자에게 창작의뢰 또는 제3자와 공동 창작하는 경우,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함

계약준비단계(조달청 공고 준비 단계)

-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에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 작성 예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참고] 위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 확보 가능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 단계

- 계약상대자 선정 후 용역 계약 체결 단계, 또는 용역 완료(준공) 단계에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
  ⊙ 부록 100쪽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참고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경우**
→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이란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고 취지를 명시
※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반드시 별도 특약을 통해 양수·양도의 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함

[예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작성 예시(갑:계약 대상자, 을:공공기관 등)

예시 1. 갑은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
예시 2. 갑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 만일, '갑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을에게 양도한다'라고만 적을 경우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에게 있음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 **저작재산권 일부를 양도받는 경우**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을 일부만 보유한 경우에도, 자유이용을 위해 남은 권리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 부록 103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참고

[참고] 양도계약 문구에 따른 저작재산권 귀속

〈계약문구 예시〉

1. 저작권에 대한 약정 없이 저작물 제작을 위탁 → 제작업체에 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 저작권 없음 : 공공저작물 아님]
2. 저작권에 대한 약정 없이 결과물은 ○○소유로 함 → 제작업체에 저작권 귀속. 공공기관 등은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만 귀속 [공공기관 등 저작권 없음 : 공공저작물 아님]
3. '2차작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함 → 저작재산권 전부 양수인(기관)에게 귀속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제외한 저작권 '일부' 양도]
   ※ 저작권자는 독점적 비독점적으로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가능
   ※ 저작재산권은 양도 및 상속이 가능

· **양도 받는 저작물에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인 초상권 등 기타 권리의 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확보

⊙ 부록 100쪽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중 '확인 및 보증' 조항 참고

→ 제3자의 초상권이 담겨있는 사진저작물의 경우, 별도로 [초상 이용 동의서] 작성

⊙ 부록 104쪽 [초상 이용 동의서] 참고

※ 저작재산권을 전부 취득한 경우라 할지라도 제3자의 초상권이 담겨있는 사진저작물을 공공저작물로 개방할 경우 초상권 침해 문제 발생 가능

[참고] 공모전 공지 시 주의 사항

- 공모전 입상작에 대해 별도 협의로 저작권 취득 또는 이용허락 필요(공모전 불공정 약관 시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 반영)

잘못된 예		수정예시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주최측**에 귀속한다.	⊙	출품된 작품의 저작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다.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전제**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다. 이때 양도 여부, 범위 및 그 대가에 대해서는 추후 입상자(저작자)와 별도 합의를 통해 정한다.
주최 측은 수상작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주최자는 입상작을 **비영리·공익적 목적**으로 발표일로부터 **( )년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 응모작을 접수할 때 응모작 반환 여부에 대한 응모자의 의사 확인 사항, 부정행위에 대한 안내 필요

⊙ 「창작물 공모전 지침(문화체육관광부 배포)」,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2628호)」 참고

2) 국민의 자유이용을 위한 사후적 권리 처리

국민의 원활한 자유이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은 저작권 양도 등 권리처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자유이용을 위해 권리처리가 필요한 경우
  · 해당 저작물이 민간에 제공되어 더 큰 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하거나 민간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는 경우, 공공기관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 추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할 목적을 가진 저작물 (예 : 지자체 관광안내 책자, 정책 안내소식지 등)
창작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면 국민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는 저작물 (예 : 외국의 법, 제도 등의 번역물 등)
교육적 목적을 가진 저작물 (예 : 독립기념 관련 자료, 공공기관에서 개발한 교재 등)
기타 민간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는 저작물 등

[참고] 국가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 계약 체결 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 체결 금지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가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국가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제11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국가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유재산법의 취지에 따라 국·공유재산 외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창작하는 저작물 또한 창작자(용역수행자)에게 저작권 전부 귀속 불가

- 창작자·용역수행자의 활용이 더 바람직한 경우
  · 공동 소유를 원칙으로 하되,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창작자(용역수행자)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창작자(용역수행자)에게 저작재산권 일부를 귀속시키는 것도 가능

공동으로 창작하였으나, 연구수행기관의 지속적인 활용이 필요한 저작물
(예 : 공공기관의 담당자와 민간 심리상담사가 공동으로 창작한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영상저작물 등)

재정적 지원을 받아 연구수행기관이 기획하고 창작한 저작물
(예 : 용역수행기관 등이 기금 등 공적재원을 지원받아 제작한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복제권·배포권 등 일부 저작권재산권을 연구수행자에게 귀속)

연구수행자의 추가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소프트웨어 또는 상품 개발이 예상되는 저작물
(예 : 신규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시 연구수행기관이 보유한 원천 소스가 사용되어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등)

- 저작재산권 추가 확보, 또는 공공누리 적용 동의를 통한 공공저작물 제공
  · 당초 저작재산권 전부 확보의 취지로 계약한 경우 →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취지로 추가 계약
  · 저작재산권 추가 확보가 어려울 경우 → '공공누리 적용에 대한 동의' 확보([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작성)를 통해 공공저작물 제공

⊙ 부록 103쪽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참고

제3장
공공저작물 관리

1. 담당자 지정 및 공표(지침 제7조) 44

2.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지침 제8조) 48

1. 담당자 지정 및 공표

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 등의 장의 제1항의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실무담당자 지정 및 공표

- **1단계** : 공공저작물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 별도의 업무담당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자체적으로 담당자 지정 가능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한 후 내부 결재하고 공지

[참고 서식] 내부결재 및 공지

수신 : 내부결재
제목 : 공공저작물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관, 실무담당자 지정
내용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법」 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에 의거 공공저작물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관, 실무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관명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전자우편	저작권정책 게시 URL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2단계** : 결재된 문서를 근거로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한국문화정보원에 공문으로 통보,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 등록
  ※ 기관명, 담당자 확인 후 사후 승인

[참고 서식] 한국문화정보원에 공문 통보

수신 : 한국문화정보원
제목 : 공공저작물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관, 실무담당자 지정 알림
내용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저작권법」 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제7조(담당자 지정 및 공표)에 의거 공공저작물 관리부서 및 관리책임관, 실무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관명	구분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사무실)	전자우편	저작권정책 게시 URL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3단계**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
  · 기관 홈페이지의 저작권정책 및 조직도에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참고] 기관 홈페이지의 저작권정책 게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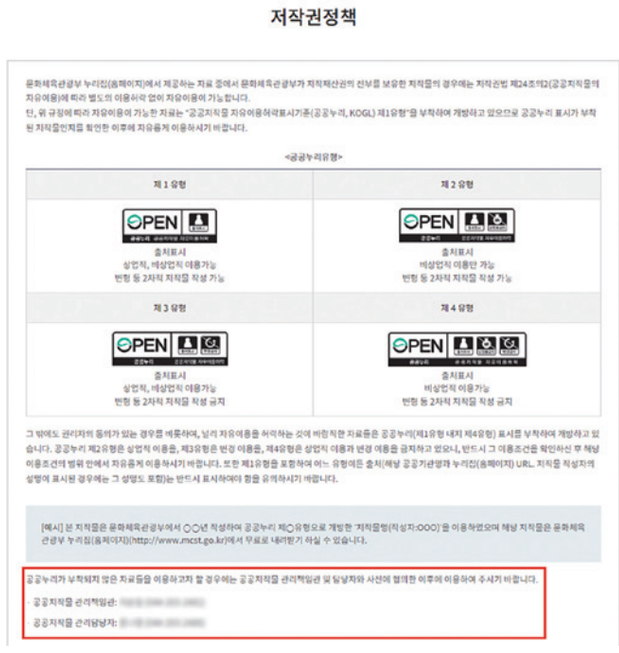

- **4단계** : 인사이동으로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변경이 이루어졌을 경우 위 순서를 반복

2)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실무담당자의 업무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지침 제7조 제2항 각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1. 공공저작물 관련 관리·제공·이용 업무총괄 및 지원
   → 해당기관의 저작물 작성과 저작재산권 취득 시 권리 확보 안내
   →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가능성 검토 및 제공 총괄
2.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업무총괄 및 지원
   → 공공저작물 관련 설명회 및 워크숍, 기타 교육·연수 참여
3.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의 기관 내 업무 총괄 및 지원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제공 및 이용 요청 응대
4. 공공저작물 관련 시책과 기관 내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조정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관련 기관 자체의 공공저작물 관련 정책 수립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를 위한 사항 등
   → 제공(개방)중인 공공저작물(저작권)의 보존 관리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기타 업무 담당자들의 협조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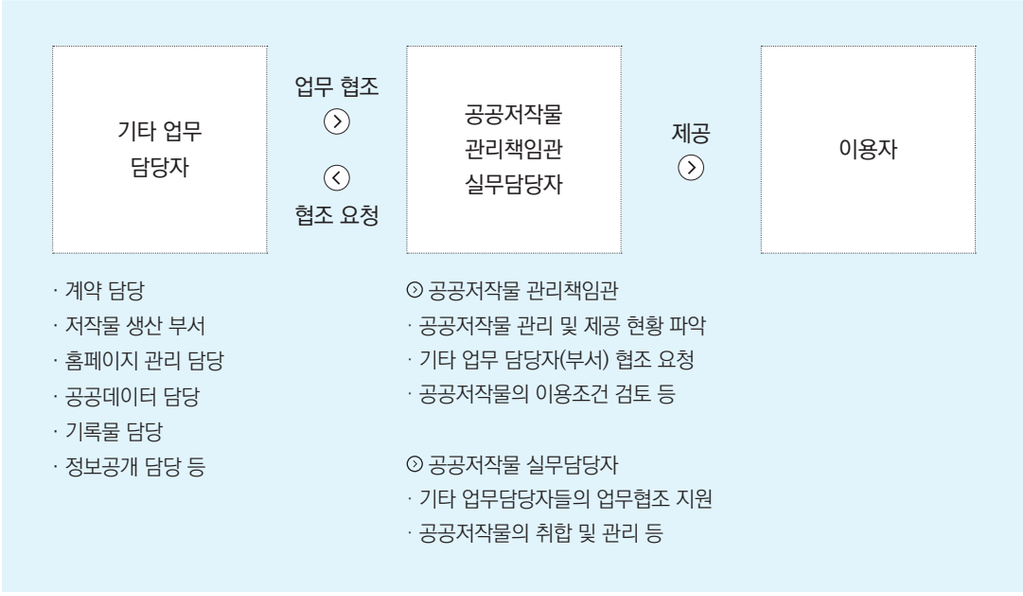

3)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실무담당자의 교육·훈련 지원

-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지원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에서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훈련을 제공

· 소집교육

교육명	일정	내용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 연수	연 2~3회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및 개방지원 서비스 안내 2. 저작권 일반 3. 공공저작물 개방 실무 교육 4.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안내 5. 지자체 합동지표평가 안내 6. 저작권 및 업무관련 1대1 대면상담 등
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상식	11월	1.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사례 강연 2.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

※ 교육신청 등 상세내용은 공문 및 공공누리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 방문교육

교육 과정	일정	내용	대상
개방교육 (2시간)	개방지원 서비스 제공기간 (3월~12월 초)	1. 저작권 일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 안내 및 공공저작물 개방 실무 교육 3. 기관요청에 따른 맞춤형 저작권 교육 지원	기관 담당자
활용교육 (2시간)		1. 저작권 일반 2. 공공누리 제도 안내 및 공공저작물 활용 방법 교육 3. 공공저작물 민간 활용사례 소개	이용자

· 온라인교육

교육 제공 사이트	교육내용	수강 방법
공공누리 누리집 e-러닝교육 www.kogl.or.kr/edu/lecture.do	실무자를 위한 공공저작물·공공누리 제도 바로 알기 1. 공공저작물 이해를 위한 저작권 개념 알기 2. 공공저작물 실무 3. 공공저작물 신탁관리제도	·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없이 영상 교육자료 시청 · 수료증 미발급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나라배움터		· 교육이수 희망기관과 나라배움터 간 콘텐츠 상호 공동활용 협약을 맺어야 인정되므로 사전확인 필수 · 수료증 발급(120분 교육인정)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e배움터 edu-copyright.or.kr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15차시)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산관리 이해(3차시)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6차시)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4차시)	· 로그인 후 영상 교육자료 시청 가능 · 수료증 발급(교육별 상이)

2.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제8조 (저작권정보 구축 및 보존) ①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공공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보존

- 공공기관 등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관리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분류	요소명	하위요소	정의	표시형식	필수여부	비고
저작물 정보	저작물명	원제목	저작물의 대표적인 제목	자유기술	필수	
		대체명	영문명, 부제목, 한자명, 별칭, 레이블 등의 대체 제목	자유기술	선택	
	유형		저작권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저작물의 유형	어문 / 음악 / 연극 / 미술 / 건축 / 사진 / 영상 / 도형 / 컴퓨터프로그램	필수	
	디지털화 형태		디지털화된 저작물의 형태(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음원 등)	텍스트 / 이미지 / 음원 / 영상 / 복합	필수	
	설명		저작물의 특징, 내용, 가치 등의 상세 내용	설명, 상세내용, 스크립트, 이용 안내, 약력	선택	
	주제어		저작물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	태그, 키워드	선택	
	언어		자원의 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언어	언어명	선택	
	제작일	제작일	저작물을 제작한 일자 (작품제작일,촬영일,제작년도)	YYYY-MM-DD / YYYY	필수	
		공표일	저작물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일자 (게시물 등록일, 발행일, 발행년도)	YYYY-MM-DD / YYYY	필수	
	계약서		계약서 보유 여부	유/무	필수	
저작자 정보	저작권자	저작자명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나 단체명	성+이름 / 집단명	필수	
		소속	저작자가 개인일 경우 저작자가 속해있는 집단명	집단명	선택	
	공동저작자		저작물을 공동으로 창작한 사람이나 단체명	성+이름 / 집단명	(해당시) 필수	
	저작인접권자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창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설자, 매개자, 전달자로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명	성+이름 / 집단명	(해당시) 필수	
권리 정보	공개유형		공공누리 개방 유형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필수	
	저작물성		단순 정보 성 자료와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구분	저작물 / 저작물성없음	필수	
	비보호저작물		저작권법 제 7조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구분	비보호저작물 / 보호저작물 / 만료저작물	필수	
	업무상저작물		공공기관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로 계약 또는 근무 규칙 등에 따른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업무상저작물 / -	필수	

분류	요소명	하위요소	정의	표시형식	필수여부	비고
권리 정보	상업적이용허락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의 확보 여부	상업적이용가능 / 상업적이용금지	필수	
	저작재산권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 / X	선택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이라 하며,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확보 여부	○ / X	선택	
		공중송신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권리 확보 여부	○ / X	선택	
		전시권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 / X	선택	
		배포권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 / X	선택	
		대여권	배포권의 예외로 인정되는 권리로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확보 여부	○ / X	선택	
		2차적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확보 여부	○ / X	선택	
	공동저작자동의		공동저작자의 개방 동의 의사 여부	○ / X	(해당시) 필수	
	유효기간	저작권 만료일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 일자 (공표일 이후 70년)	YYYY-MM-DD / YYYY / 만료저작물	필수	
		계약상 유효기간	계약 상의 저작물의 권리 이용 기간	YYYY-MM-DD / YYYY	(해당시) 필수	
	초상권		초상권 이용 동의 여부	동의/미동의	(해당시) 필수	

› 부록 106쪽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작성 예시] 참고

2) 만료저작물의 저작권정보 관리와 보존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
  -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저작권정보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함
  -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나,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 공공기관 등은 관리 중인 저작권정보를 통해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를 확인하면 이를 나타내기 위하여 해당 공공저작물을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마크로 표시함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국민이 알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마크를 표시함

[참고]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 기준

국문 : OPEN 자유이용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영문 : OPEN FREE Free use of expired public works 영한 : OPEN FREE 자유이용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시점) 확인(산정)
  ·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여부(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행 저작권법과 이전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보호기간을 확인하여야 함
  (확인 1)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 종류에 따른 저작권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및 존속기간을 확인

[참고] 현행 저작권법 기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저작물의 종류	만료기간 산정 기산점	존속기간
단독저작물	저작자의 사망 해의 익년	70년
공동저작물	최후 저작자 사망 해의 익년	최후 사망자의 사후 70년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작자미상)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단, 기간 내 실명 등록 받은 경우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업무상 저작물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 사회단체가 저작자)	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
영상저작물	공표 익년	70년
계속적 간행물	매책·매호·매회 등이 공표되는 때 또는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창작물은 최종 부분의 공표 시 (3년을 경과하여 계속의 부분이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부분을 최종으로 봄)	70년
저작인접권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70년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50년

※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해(1.1)부터 가산합니다.(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권법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저작권법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 (확인 2) 이전 저작권법의 개정에 따라 저작권 보호기간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공저작물이 어느 시점의 저작권법이 적용되는지 검토

[참고] 1957년 저작권법 기준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30년간 존속하며, 사진저작물은 발행 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10년간 보호됨

1957년 저작권법 제30조(동전) ①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간 및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②수인의 합저작에 관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종사망자의 사후 30연간 존속한다.
1957년 저작권법 제40조(동전) 사진저작권의 기간은 그 저작물을 처음으로 발행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만일 발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판을 제작한 해의 익년부터 기산한다.

[참고] 보호기간 연장 추이 일람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보호기간 안내서」, 2017, 30-31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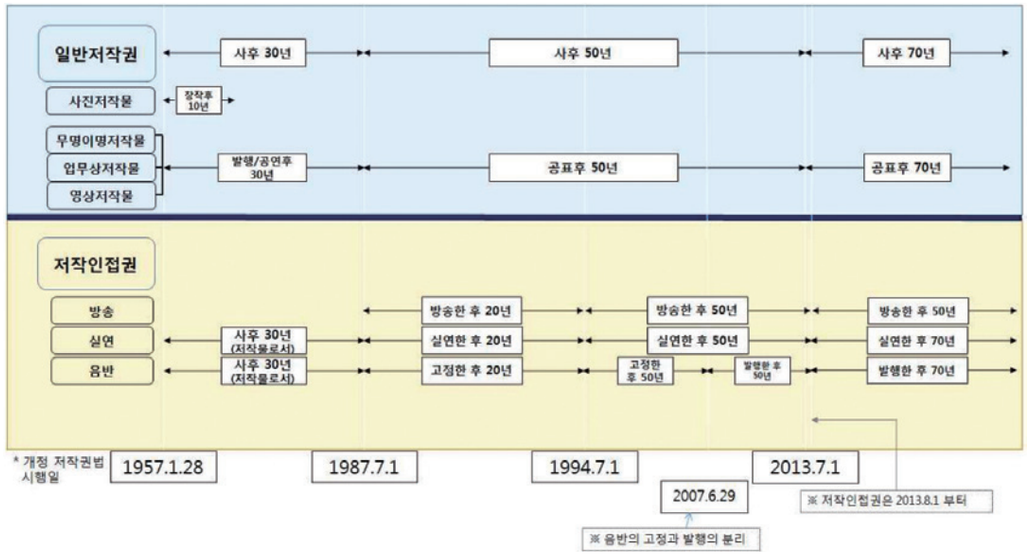

[참고] 저작권법 개정시점에 따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만료기준 시점

① 사진저작물 : 197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경우, 예외사유 없을 시 → 만료
②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경우 → 만료
③ 관공서 등 발행한 저작물 :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한 경우 → 만료

- 저작권 보호기간 등 저작권정보 관리
  ·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 만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마크 표시를 하려면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정보를 관리하여야 함
  ※ 저작권정보 확인 사항 : 저작권 귀속관계, 저작물의 종류, 저작자(업무상저작물 여부 포함), 창작(공표)시기, 저작자의 사망시기 등
  > 48쪽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참고

- 저작권 보호기간의 만료 여부의 판단은 법률 해석의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
  ※ 저작권 보호기간 산정에 대한 문의 :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1670-0052)

제4장
공공저작물 제공

1. 공공저작물 개방(지침 제9조) 54
2. 공공저작물의 출판과 발행(지침 제10조) 56
3. 공공누리의 적용 (지침 제11조) 57
4. 제공비용(지침 제12조) 66
5.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지침 제15조) 66

1. 공공저작물 개방

제9조(공공저작물 개방) ①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홈페이지에 "저작권정책"을 게시하여 공공저작물의 이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제공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저작물 등록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적용(부착)하여 제공

〉62쪽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방법] 참고

2)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 각 기관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의 저작권정책을 통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 공공누리 적용에 따른 자유이용대상임을 게시

〉105쪽 [저작권정책 표준안] 참고

· 기관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게시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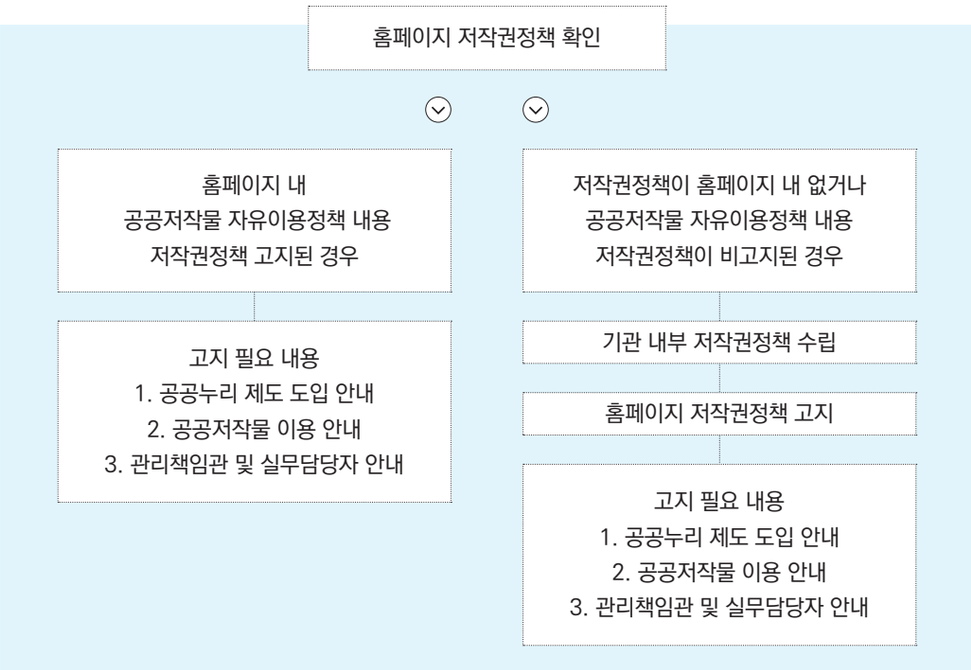

3) 이용자 요청에 따른 제공

-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음

※ 자유이용대상 공공저작물에 '공공누리'를 붙여 개방하는 것 외에 미공표 저작물에 대한 개방요청에 응하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맞춰 변형 등을 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음

[참고] 공공데이터 제공 의무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③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2.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제10조(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출판 및 발행을 통한 공공저작물 제공

- 정부간행물 납본 지침(국립중앙도서관)상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적용 의무화

2) 출판 및 발행 시, 제3자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계약 제한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취지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설정 계약은 부적절

※ 배타적발행권이나 출판권 설정계약,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은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표적 계약 행위

▣ **저작권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 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에 대하여 발행 등의 방법 및 조건이 중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 · 배포권 · 전송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제63조(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 · 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공공누리의 적용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공공누리 적용 원칙

- 공공기관 등은 국민이 자유이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인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공공저작물을 개방
-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등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이 원칙
  ※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공공데이터법이 규정하고 있는 원칙(영리적 이용 제한 금지)에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해당 공공저작물이 공공데이터법상 제공 예외사유(제17조) 및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경우하면 그 적용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음
-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의 개방형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부착

⊙ 62쪽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방법] 참고

공공누리(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의 개념 및 유형

-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표시제도

※ 이용허락조건을 보다 간소화하여 자유이용의 범위를 넓히고 공공저작물에 한정된 사용으로 신뢰성을 높이며, 공공기관의 면책약관을 포함

※ 민간에서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로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사용되고 있음

- 출처표시의무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의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중에 하나를 선택 적용
-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허락의 범위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 출처 표시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 상업적 이용 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불가능 - 상업적 이용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등 2차적저작물 작성 불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13쪽~16쪽 [공공누리 공고문] 참고

2) 공공누리 적용 예외 사항 확인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 적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공공누리 부착 추진 (등록된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공누리 적용 :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공공누리 미적용)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자(공동소유자)의 미동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공동소유)하고 있는 제3자가 해당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개방(공공누리 적용) 미동의 ↓ 공공누리 적용 불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불가)

⊙ 부록 107쪽 [공공누리 적용 예외사항의 해석] 참고

②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도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단, 이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공공저작물도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유이용이 불가피한 특수한 경우에만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연구결과의 왜곡이 우려되는 경우 ✓ 시험문제 개방에 따른 문제은행방식의 운영이 사실상 곤란해지는 경우 ✓ 국외유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저작물의 판매로 인한 수입이 기관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 등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후 공공누리 미적용 또는 신탁을 통한 선택적 제공

※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는 가능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3) 공공누리 유형 선택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저작재산권 전부 보유 시

·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저작권 양도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취득한 경우

→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 자유이용대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에 해당할 경우 공공누리 적용 불가

→ 제4호에 해당하고 중앙관서의 장 등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는 경우 공공누리 적용 가능

· 자유이용대상에 해당하지만 공공누리 제1유형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변경, 상업적 이용이 곤란한 경우)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후 제2유형~제4유형 적용

※ [참고]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데이터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저작권 전부 보유시 제2유형, 제4유형 적용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저작재산권 일부 보유 시

· 제3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을 뿐 저작재산권 양도를 받지 않은 경우

→ 공공누리 적용 허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공공누리 적용 후 제공(개방) 가능

※ 저작권자가 동의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른 공공누리 유형 적용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것으로 했지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추가적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권리 양도계약을 통해 공공누리 제1유형 적용

→ 추가적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대한 권리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공누리 적용 허락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공공누리 적용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공동소유인 경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공동 소유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공공누리 적용 허락에 대한 동의를 받아 공공누리 적용 가능

② 공공기관

-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적용방법을 준용하여 시행

붙임 1. 공공저작물의 제공·관리 프로세스(국가·지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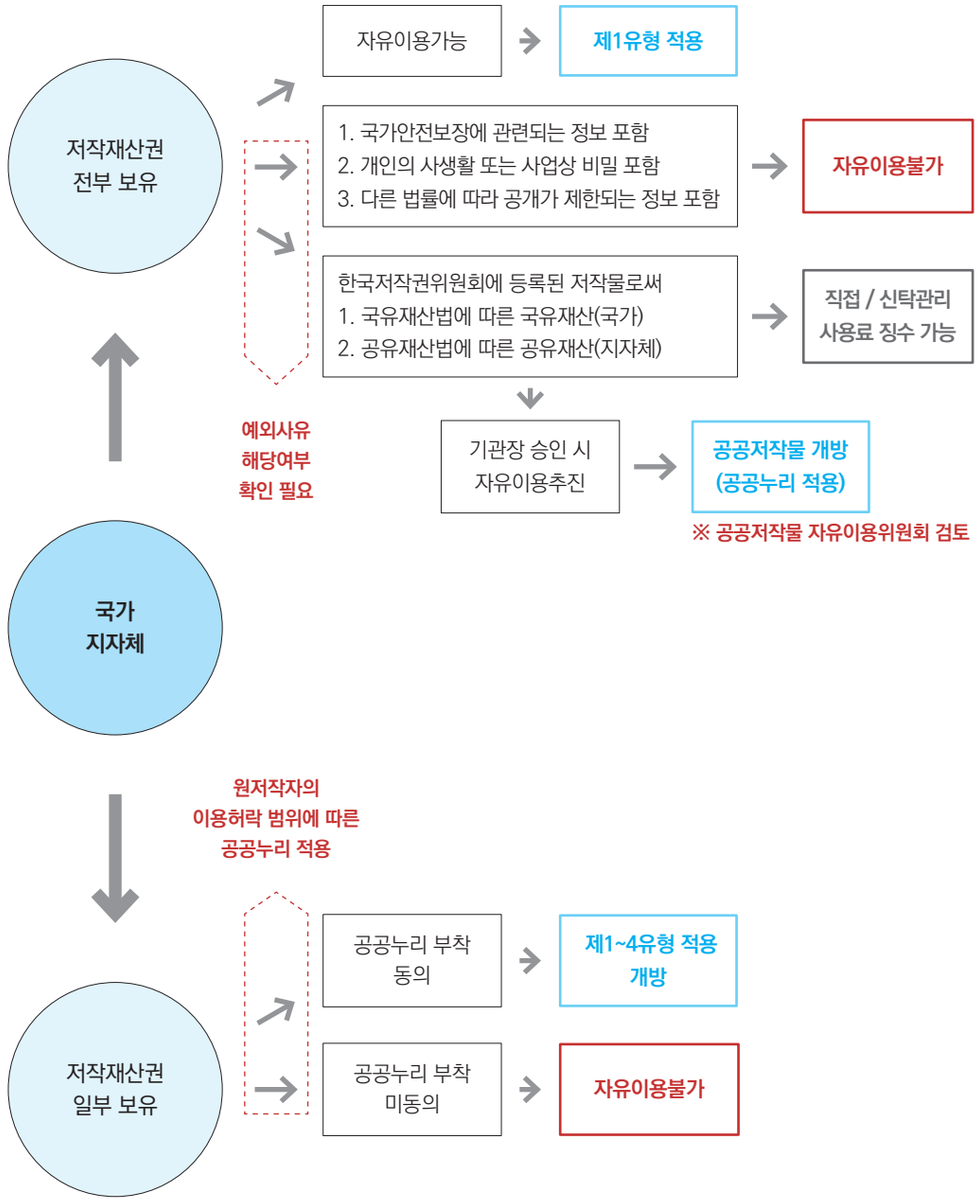

붙임 2. 공공저작물의 제공·관리 프로세스(공공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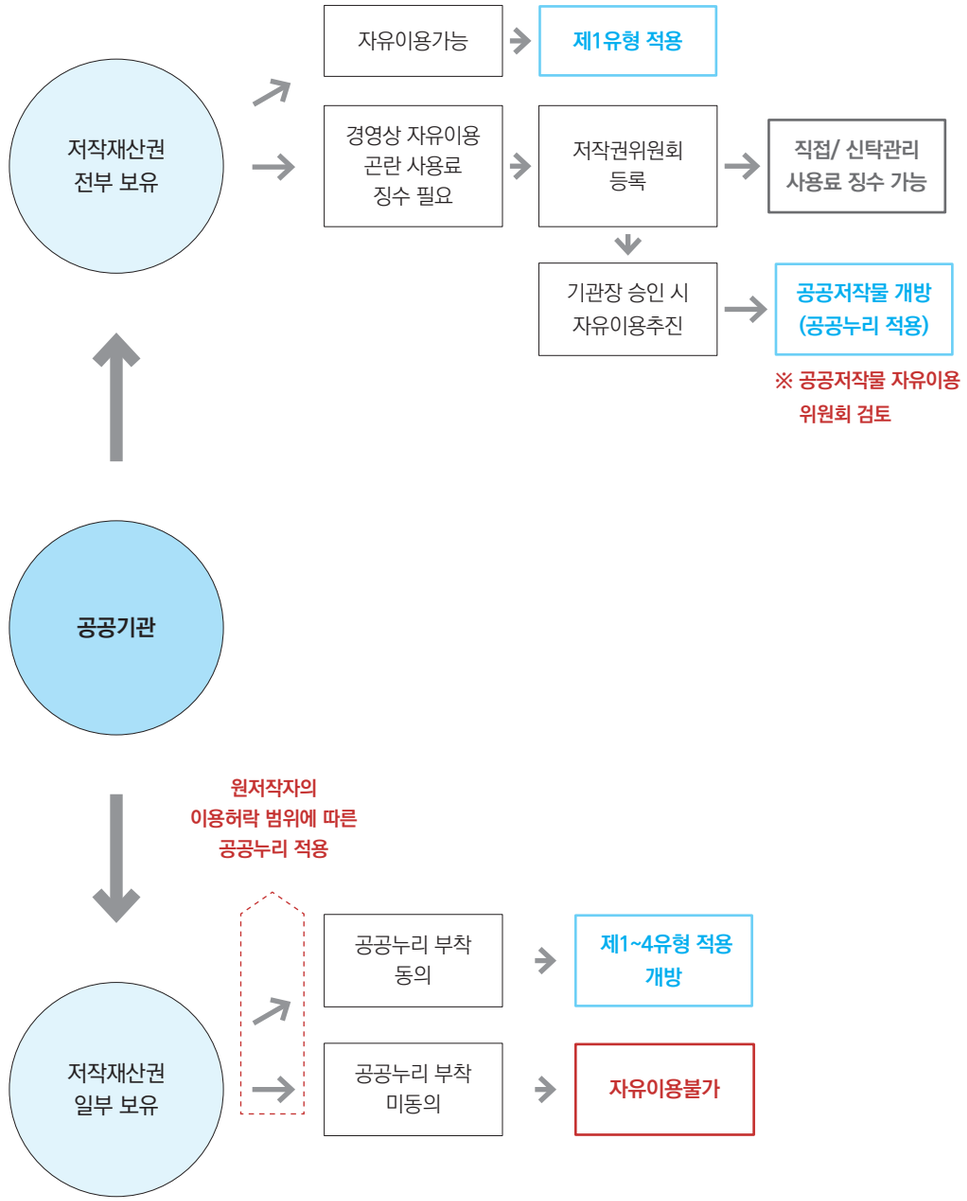

4)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 온라인 부착
  ·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 적용

방법 1 공공누리 누리집에 공지된 HTML 공통코드 복사 및 붙여넣기

- 게시물 작성 시, 기존과 같이 본문내용을 작성합니다.
- 작성을 마쳤으면 에디터 편집모드를 [HTML]로 변경합니다.
- 내용 제일 하단부분에 아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의 HTML 태그를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합니다.
-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작성을 완료합니다.
- 게시물 하단에 공공누리 유형마크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 공공누리 유형 적용을 위한 공통 코드 바로가기 :
https://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82

방법 2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적용 **(추천!)**

〈참고〉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란?
기관 홈페이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javascript 기반 코드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유형 선택화면을 제공하며, 원클릭만으로 공공누리 적용 가능
※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바로 가기 : https://www.kogl.or.kr/edu/eduDataView.do?dataIdx=84

[예시] 공공누리 적용 간편화 스크립트 적용 화면

방법 3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유형마크 다운받아 이미지 적용

- 게시물 작성 시, 기존과 같이 본문내용을 작성합니다.
- 작성을 마쳤으면 이미지 업로드를 선택 합니다.
- 내용 제일 하단부분에 다운로드를 받은 공공누리마크 중 해당되는 유형을 업로드 합니다.
-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작성을 완료합니다.

※ 공공누리 유형마크 다운로드 : http://www.kogl.or.kr/info/license.do

〈온라인상의 공공누리 적용 예시〉

- 오프라인 부착
  · 오프라인 책자 형태(연구보고서, 간행물 등) 저작물

제작 시

공공누리 유형마크 다운로드 :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공공누리 유형 위치 : 간행물의 우측 상단
공간 배정 : 간행물의 위쪽 1cm, 오른쪽 1cm(간행물 크기와 상관없이 공공누리 유형별 표준화된 크기 적용)
※ 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되, 디자인 요소를 고려하여 크기, 위치 조정 가능

인쇄 시

인쇄자료 초안을 인쇄업체에 넘길 때 기관에서 결정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송부한 후, 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부착

온라인 서비스 시

PDF – 아크로벳 프로그램으로 편집이 가능한 경우, 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부착
편집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부착 방법을 준용하여 부착하되, 이용자의 이용조건 준수를 위하여 유형에 대한 설명 명시

한글 – 한글 프로그램에서 메뉴 [파일] – [공공누리 넣기]
유형 결정 및 그림만 표시 선택–오프라인 책자 형태 가이드라인 준용하여 부착

〈오프라인상의 공공누리 적용 예시〉

· 책자 이외의 오프라인 형태의 저작물(팸플릿, 행사포스터, CD, DVD 등 기타 저작물)
  → 유형에 따라 공공누리 마크를 다운로드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 자유롭게 부착

5) 공공누리 누리집 수집 연계

공공누리 누리집은 공공기관 등에서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부착해 개방하는 공공저작물 정보를 웹크롤링 방식으로 수집하여 제공

- 연계 신청
  · 공공누리 유형마크 사전 확인 후 연계 신청

사전확인

· 공공누리 유형마크 부착 여부
· 기관 홈페이지에 간편화 스크립트가 적용된 게시판이 있는지 여부
· 공공누리 누리집에 해당 기관이 연계되어 있는지, 회원가입이 되어있는지 여부

↓

연계시스템

· 기관 홈페이지의 메뉴(게시판) 단위로 진행되며, 메뉴(게시판)별로 최초 1회 신청 이후 자동 연계됨
  ※ 연계신청 한 이후, 해당 게시판에 게시물을 공공누리 유형마크를 적용하여 등록하면 자동으로 공공누리 누리집에 연계됨
· 기존에 연계되고 있거나, 한번 신청(연계)된 메뉴(게시판)는 추가 연계신청 불필요

↓

연계방법

· STEP 1 : 공공누리 누리집에 기관 회원으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 접속
· STEP2 : 지정된 양식에 따라 '저작물 연계신청' 메뉴에서 신청
· STEP3 : 등록한 내용은 '저작물 관리' 메뉴에서 확인 및 수정, 삭제, 확인증 출력 등 가능

4. 제공비용

제12조(제공비용) 공공기관 등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의 제공은 무료인 것이 원칙임
-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필요최소한의 실비"내 이용자에게 청구 가능

※ '필요 소한의 실비'란 복사비, 제본비 등 제공시 발생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의미 (저작물 창작, 보존,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음)

5. 공공저작물의 제공 중단

제15조 (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자유이용의 제공 중단과 공표

- 각 기관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의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이용자에 대한 제공 중단(또는 이용 중단 요청) 등의 조치 가능

〈 자유이용 제공 중단 사례 〉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예: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제공된 저작물을 이용하여 상업적 출판행위를 한 경우 등)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예:일부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50조(법정허락)에 따라 공공저작물로 제공하였으나 이후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이 발생한 경우 등)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제공된 공공저작물의 변경 이용으로 인한 정보의 왜곡으로 제3유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공공저작물 이용자의 출처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예:자유이용으로 제공된 사진을 불법 광고에 이용하여 제공 기관 및 사진 속 유형물의 가치나 인물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

-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2) 저작권 침해에 따른 대응 방법

- 침해 대응을 위한 고려 사항
  -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공 중단 외에도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침해의 정도에 따른 대응조치 가능

⊙ 저작권 침해의 기간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종류	⊙ 침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 침해된 공공저작물의 가치	⊙ 침해의 상업적 목적	⊙ 침해자의 연령, 교육수준, 경제수준
⊙ 침해의 빈도수		

- 침해 대응 방법

경고장 발송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 발송
알선 또는 조정 신청		대체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 신청 가능
민사	침해의 정지 등 청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 정지 청구 및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 *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명예회복 등의 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
형사	형사고소	공공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형사고소 (저작재산권 침해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5장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1. 이용료 징수(지침 제13조) 70

2. 공공저작권의 신탁(지침 제14조) 72

1. 이용료 징수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1) 이용료 징수

- 국·공유재산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이거나 기타 자유이용이 곤란한 사유로 인해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탁하거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 가능

[참고] 국유재산 저작물의 사용료 징수기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7조의8(지식재산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법 제65조의9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5조 제1항 제6호 가목의 지식재산 : 별표 2의2
2.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지식재산 : 총괄청이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액 또는 지식재산의 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
3.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다목의 지식재산 : 별표 2의3
4. 법 제5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지식재산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 해당 지식재산과 가장 유사한 지식재산에 적용되는 기준

〈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16호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라,「국유재산법」제5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지식재산(저작권등)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8월 19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지식재산에 적용할 사용료등의 산정 기준

제1조(저작권등의 사용료등 산정)「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 및「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제1항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중앙관서의 장이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의「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2조(국가가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의 사용료등 산정) ① 국가가「국유재산법」제5조제1항제6호나목의 저작권등의 일부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에 국가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새로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② 저작권등의 일부를 소유한 국가 외의 자(이하 "저작권 공유자"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료등을 부과하려고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그 사용료등으로 한다.

산식 : 제1조에 따라 산출된 사용료등 × (국가의 지분 비율 −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

* 다만, 저작권 공유자의 지분 비율이 국가의 지분 비율과 같거나 국가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0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업 이관에 따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른 저작권등의 사용료등은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아닌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

2. 공공저작권의 신탁

제14조(공공저작권의 신탁)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1)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

- 공공누리 적용 등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경우에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의 관리 부담을 덜고 국민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자유이용 개방이 곤란한 경우〉

무료 개방보다 유료 개방이 적합한 경우
(예 : 기관에서 자체 제작한 수익상품의 개방 시 기관 운영의 어려움 발생 등)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이용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경우
(예 : 공공저작물의 이용 성과물을 확인, 파악해야 하는 경우 등)

저작재산권 공동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 : 공동소유자의 요청에 따른 합의로 신탁관리를 하는 경우 등)

기타 공공저작물로서 제공할 의사는 있으나 자유이용이 곤란한 경우 등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무료 저작물의 저작권을 위임받아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저작권 이용허락 및 민간 유통을 대행하고 저작권 권리처리를 지원

- 현재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기관으로 허가된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제도를 운영

· 공공저작물 저작권 신탁관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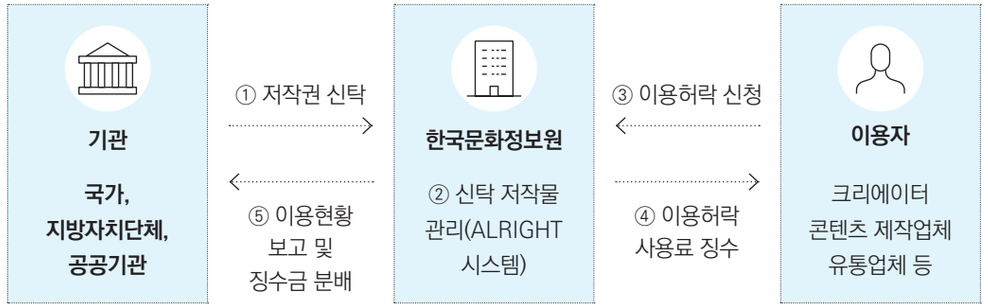

① 권리 신탁 :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 상의 권리를 관리하도록 위탁
② 신탁 저작물 관리 : 시스템을 통해 신탁 저작물을 전시하고,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유통
③ 이용허락 신청 : 개인, 기업, 기관 이용자로부터 신탁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신청을 접수
④ 이용허락 : 이용허락 신청서 검토 후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한 사용료 징수
⑤ 이용현황 보고 및 징수금액 분배

· 대상 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 신탁 대상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법」상 권리
· 신탁 범위 :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 신탁요건
국가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지방자치단체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공공기관 :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

2) 신탁계약 안내

방문·전화상담
(주체 : 공공저작권 보유기관)

- 신탁계약 체결 관련 방문·전화 상담(상시)
- 신탁 희망기관 모집 공문 및 상담 신청서 회신(연 2회)

저작권 등록 확인 등 사전검토
(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 신탁 상담 신청서 및 신탁저작물 목록 검토
- 저작위 저작권등록증(권리변동) 및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 확인
- 용역 과업지시서(산출내역서) 및 사업계약서 등 확인
- 기타 산업재산권 설정 등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 확인

자료보완 및 신탁계약 체결
(주체 : 계약 당사자)

- 검토의견에 따른 자료보완
- 신탁계약서 작성(기관 간 특약 필요시 부속계약서 작성)
- 신탁약관 및 사용료 징수 규정 등 관련 내용 확인 및 서명
- 위탁기관 신탁저작물 원문 제출, 신탁시스템 업로드

저작권 관리 및 이용현황 보고
(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 민간(개인 및 법인) 이용허락 신청 접수
-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에 의거한 사용료 산출 및 징수
- 신탁저작물 홍보 및 모니터링
- 연 1회(차년도 1분기) 저작권 이용허락 현황 보고

징수금 분배
(주체 : 한국문화정보원)

- 연 1회 징수금 정산 및 지급
  (징수금의 경우 다음 연도 1분기 이내 지급 진행)
  ※ 추진 상황에 따라 절차 조정 가능

3) 신탁저작물 이용절차

01. 이용허락 신청
신청서 접수

02. 신청내역 검토
목적 및 이용 범위 확인

03. 사용료 징수 및 이용허락 통보
사용료 등 안내

04. 저작물 제공
온·오프라인 제공

05. 이용내용 확인
신청서에 따른 이용 확인

제6장
공공저작물 관리 지원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지침 제16조) 78
2. 공공저작권 저작권 관리 진단(지침 제18조) 80
3.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지침 제17조) 83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확인지원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및 개선 지원
3.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촉진을 위한 자문
4.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연수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1)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안내

- 설치 목적 :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 지원, 기관의 성격과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의 특성에 맞는 지원 서비스 제공(무료 제공)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1670-0052)

- 주요 제공 서비스
  · 공공기관 등의 담당자의 저작권 관리 인식 제고 및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관리체계 진단	권리확인 지원	법률 상담 및 컨설팅	맞춤형 교육
· 저작권 관리 현황 진단 관리기준 권고 ·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관리체계 개선 결과보고	· 검토의뢰 게시물 개방 가부 검토	· 기관별 저작권 이슈, 분쟁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 · 계약서 검토	· 전 직원 대상 방문교육 · 책임관 및 담당자 대상 수준별 소집 교육 실시

  · 공공저작물 이용자의 활용률 제고를 위한 권리 관계 확인 및 저작권 상담 등

2) 개방지원센터 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2.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제18조(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진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를 진단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를 해당 공공기관 등에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진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현황 등 실태 진단 후 진단에 따른 결과 통보 및 개선 권고

목적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수준을 진단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하여 공공저작물 개방 격차 해소 및 공공저작물 확대 개방 기반 조성
근거규정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필요성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이행실태를 관리지수 평가를 통해 점검하고 후속지원을 통한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 개방 촉진
진단 대상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교육지원청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6쪽~27쪽 [지침 적용기관의 범위] 참고
진단	각 기관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인(특별히 필요한 경우)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이행수준 평가(공공저작권 관리지수 진단)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진단결과 반영	평가기관은 평가 결과 분석보고서를 평가대상 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기관은 공공저작물 관리에 있어서 평가결과를 최대한 반영

[참고] 공공저작물 관리체계 진단 평가 항목

진단항목
1. 공공저작물 관리 조직 운영
가. 관리 조직 구성
1. 귀 기관은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전담부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2. 귀 기관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을 지정하고 있습니까?
3. 귀 기관은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4. 귀 기관은 부서(과)별 공공저작물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까?
나. 조직 운영 노력
1. 귀 기관의 공공저작물 책임관 및 담당자는 지난 해부터 공공저작물 또는 저작권 교육을 얼마나 이수하였습니까?
2. 귀 기관에는 체계적인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및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예'라고 답변한 경우 2-1로)
2-1. 귀 기관은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및 지침을 언제부터 마련하였습니까?
3. 귀 기관은 전담부서에서 부서별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 계획을 언제부터 취합 및 관리하고 있습니까?
4. 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에 대해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까?('예'라고 답변한 경우 4-1로)
4-1.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여부를 표시하고 있습니까?
2.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생태계 조성
가. 공공저작물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개방 생태계 조성 노력
1. 귀 기관은 구성원의 공공저작물 및 저작권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예시 : 워크숍, 설명회 개최 또는 참석)
2.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저작권정책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라고 답변한 경우 2-1로)
2-1.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내에 저작권법 제24조의 2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3. 귀 기관은 홈페이지 게시물 및 오프라인 저작물(책자, 뉴스레터 등)에 공공누리 마크를 얼마나 부착하고 있습니까?
4. 귀 기관에서 계약서 및 제안요청서 등을 작성 시 저작권을 명시하고 있습니까?
5. 귀 기관은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을 전부 확보하지 못하였을 경우 원저작자(공동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있습니까?
6.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예 : 특정뷰어에서만 열리는 파일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는 게시물이 있습니까?
7. 귀 기관의 개방하기 어려운 저작물 중 신탁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저작물은 얼마나 있습니까?
나. 공공저작물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관 내 활동노력
1. 귀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일반인, 기업의 사례가 있다면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귀 기관이 공공저작물을 일반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2)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기관 및 담당자 포상

- 진단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

[참고]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 기관 및 담당자 포상

· 접수 시기 : 매년 9월

· 대상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대상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포상내용

분야	구 분	포상 내용	대상	
			국가 · 공공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우수 기관	정부포상(장관표창)	문체부 장관 표창장 및 상금 100만원	1개 기관	1개 기관
	최우수상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 및 상금 50만원	1개 기관	1개 기관
	우수상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 및 상금 30만원	2개 기관	2개 기관
우수 담당자	정부포상(장관표창)	문체부 장관 표창장 및 상금 100만원	담당자 1명	
	최우수상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 및 상금 50만원	담당자 2명	
	우수상	한국문화정보원 원장상 및 상금 30만원	담당자 2명	

※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해년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3.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

제17조(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자문과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자유이용위원회(이하 "자유이용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저작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자유이용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저작권산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 관리되어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동조 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관광부장관이 정한 표시기준의 적용에 대한 권고
2.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3. 공공기관이 제14조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적용을 통한 자유이용 개방 권고
4. 공공저작물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권고
5. 그 밖에 공공저작물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위원회의 기능

- 국·공유재산으로 관리되거나 기타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공공저작물을 검토한 후 유형별 공공누리 적용에 따른 자유이용 개방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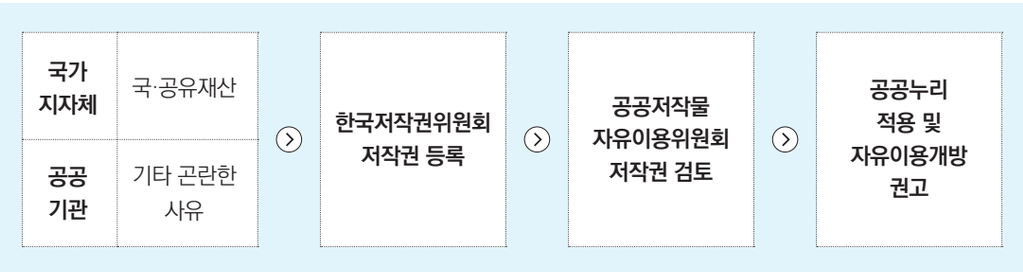

-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자문,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

제7장
공공저작물 이용

1.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지침 제19조) 86

2. 출처의 명시(지침 제20조) 87

3.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 금지 (지침 제21조) 88

4. 공공저작물 제공·이용 시 분쟁의 알선 또는 조정(지침 제22조) 89

1. 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제19조(공공누리 이용약관의 준수)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그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

- '공공저작물을 이용' 한다고 함은 저작권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 보호하는 복제·배포·대여, 공연·공중송신·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함

⊙ 29쪽 [저작재산권] 참고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손해배상(지)]
각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나 관련 법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저작권법 제12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본문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함은 같은 법에서 저작자의 권리로서 보호하는 복제, 전송, 전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공공누리 이용조건(이용약관)의 준수

-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 이용자는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함

⊙ 13쪽~16쪽 [공공누리 공고문] 참고

2. 출처의 명시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출처의 명시 의무

-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약관에 따라 출처를 명시해야 함
  ※ 저작자의 성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저작권법 제12조)

▣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출처 표시 방법

- 출판물 : 출판물의 표지 또는 내부에 출처 표시(저작자의 인격권 존중을 위해 저작자의 성명 또한 함께 표시)
- 영상물 : 엔딩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출처 표시
- 음원 :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에 출처 표시
- 사진 : 사진 내 적절한 위치에 식별 가능한 출처 표시(사진 내에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 사진 하단에 표시)
- 제품 :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기(또는 패키지에 표기)
- 기타 SNS 등 :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단순화하여 간략하게 출처 표시

※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 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기 방법, 위치 등의 조절 가능(예 : 사진에 직접 출처 표시를 할 경우 상업적 이용의 어려움 발생 등)

[예시]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문구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각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3. 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경 시 주의 사항

- 공공누리 제1유형 및 제2유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본질적인 내용을 왜곡하거나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변경할 경우,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인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유의
  ※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의 경우에는 어떠한 변경도 금지

▣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동일성유지권 침해 예시〉
예술적 가치를 표현하기 위해 창작된 저작물을 외설적 광고에 이용하여 원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연구보고서의 연구 성과나 통계 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일부를 잘라 이용한 사진저작물이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한 내용과 현저한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 동일성유지권(저작인격권) 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이 판단

〈동일성유지권 실제 침해 사례〉
① 서울고법 1994.9.27, 선고, 92나35846, 제9민사부 판결

가.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 쌍방은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해 상호협력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제작자인 방송법인은 제작하게 될 프로그램의 편성의도와 제작목적 및 주제, 출연계약의 상대방이 제작출연에 기여하게 될 형태(인터뷰 또는 토론)와 내용, 생방송 되는가 또는 녹화방송 되는가의 여부, 녹화방송 시에는 프로그램의 편집 여부와 삭제와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정도,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의 순번, 비중, 주어질 질문의 내용, 범위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출연자로 하여금 예상하지 못한 취급으로 기만당하였다고 느끼게 하여서는 아니 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며, 출연자로서는 제작자 측으로부터 방송내용에 관해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이 있어 방송에 부적합한 내용의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응하여 수정편집에 협력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
나. 방송출연계약에 따라 60분 간 방송하기로 한 프로그램을 위해 63분에 걸쳐 강연을 녹화하였으나 강연자가 연술한 내용 중 23분에 해당하는 중요부분의 내용을 방송사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여 40분 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는 강연자와의 그 출연계약을 적극적으로 침해함과 동시에 강연자의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방송사는 그 고의에 의한 불완전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강연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할 의무가 있다.

4. 알선 또는 조정

제22조(알선 또는 조정)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1) 공공저작물 제공·이용 시 분쟁의 알선, 조정

- 알선 : 분쟁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알선위원 1인이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저작권 분쟁에 개입하여 사건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제도. 성립시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함

- 조정 :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저작권 분쟁 당사자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당사자가 분쟁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함(확정 판결과 동일)

[참고]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 adr.copyright.or.kr

2)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 ※ 담당부서 : 저작권산업과
한국문화정보원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확산을 위한 저작권 권리관계 확인, 공공저작물 관리와 관련된 상담, 교육 실시, 공공누리 운영 총괄 등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1670-0052)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의 등록 및 관리, 상담 등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 ※ 저작권 상담 대표전화 (☎1800-5455)

부록

1. 참고서식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안) 92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계획 예시 96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표준안 100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103

초상 이용 동의서 104

저작권정책 표준안 105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작성 예시 106

2. 참고자료

자유이용 예외사유의 해석 107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 110

연구기관 퇴직자의 퇴직 이후 '연구 주제'의 이용범위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112

3. FAQ 116

1. 참고서식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안)

제정 20○○. ○○. ○○.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저작권법시행령」 제1조의3,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54호, 이하 "관리지침")에 의거, (해당기관명)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이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 관리·제공되어 민간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저작물"이라 함은 (해당기관명)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2. "자유이용"이라 함은 (해당기관명)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일반 국민이 개별적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누리"라 함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표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저작물을 생성, 취득, 관리,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기관명) 내 모든 부서에 적용된다.

제4조 (공공저작물 관리원칙) ① (해당기관명)은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명)은 저작재산권의 취득과 행사에 있어 제3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 (저작권 귀속) (해당기관명)의 명의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한 저작물은 (해당기관명)에 귀속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명)이 해당 공공저작물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6조 (저작권 등 권리처리) ① (해당기관명)은 제3자에게 창작을 의뢰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명)은 국민의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을 취득하는 등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당기관명)은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자유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저작물 제공) ① (해당기관명)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국·공유재산의 경우
5. 기타 자유이용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해당기관명)은 제3자가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거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나머지 권리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거나 [별지 제3호 서식] 자유이용허락동의서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당기관명)은 사진이나 영상 등 타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공공저작물을 창작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초상이용동의서를 확보하여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당기관명)은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을 (해당기관명)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누리의 적용) ① (해당기관명)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해당기관명)은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 이용자가 그 유형별 이용조건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저작권정책을 통해 이용조건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저작물 담당자) ① (해당기관명)은 (해당기관명)의 체계적인 공공저작물의 관리·제공을 위하여 공공저작물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명)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기관명) 내 공공저작물 관리·제공 업무 총괄
2. 그 밖의 공공저작물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사항 등

③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해당기관명)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 (해당기관명)은 홈페이지에 [별지 제5호 서식]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을 반영하여 공공누리 제도 및 출처표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공저작물 신탁) (해당기관명)은 다음 각 호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신탁할 수 있다.

1.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저작물
2. 기타 자유이용 제공이 곤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공공저작물

제12조 (저작권정보 구축) (해당기관명)은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권정보'라 한다)의 형태로 저작권 취득연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해당기관명)은 공공저작물의 출판 및 발행 등을 통해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만, 자유이용에 제공하는 공공저작물인 경우 제3자의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취지의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이용료) ① (해당기관명)은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하여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는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직접 징수하거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신탁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료 직접 징수가 필요한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제15조 (제공비용) ① (해당기관명)은 자유이용 대상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저작물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최소한의 실비범위 내에서 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6조 (제공 중단) ① (해당기관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② (해당기관명)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될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한국문화정보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7조 (알선 또는 조정) (해당기관명)은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알선 또는 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소 등) (해당기관명)은 (해당기관명)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정도에 따라 침해의 정지,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등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공공저작물 연간 관리계획 예시

수신 내부결재
제목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계획(안)

I. 개요

□ 추진 배경

- 기관 업무 특성에 맞는 공공저작물 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공공저작물의 체계적 관리 및 민간이용 활성화 도모
- 우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개방
  - 민간부문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 관련 근거

- 「저작권법」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 해당기관「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 *내부규정 및 지침 마련 필요
  * 이를 근거로 매년 우리기관에서 생성·취득하는 공공저작물의 관리·제공 목표 설정 등 '공공저작물 관리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추진

□ 그간의 추진경과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서비스'에 따라 수혜기관으로 선정('○○.○월)
  - 개방지원서비스 관리진단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공공저작물 관리·제공업무 추진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현황, 저작권정책 등 기관 홈페이지 게시('○○.○월)
- 기관 자체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제정('○○.○월)
- 공공저작물 관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 체계('공공저작물 관리업무 협의체') 구축('○○.○월)
- 공공저작물 저작권정책에 따라 공공누리 제도 도입 운영('○○.○월)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6-23호)' 및 기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제0조(공공누리의 적용)에 따라 공공누리 적용

□ 관리계획 주요 내용

- 기관 공공저작물 보유 및 개방현황
- 신규 공공저작물 관리계획
-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관련 교육계획
- 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 개방계획
-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필요한 기타 업무계획

II. 공공저작물 보유 및 개방현황

□ 공공저작물 보유현황

- 기관이 저작재산권 전부 또는 일부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공공저작물 현황관리
  - 총 600개 보유('○○.○월)
  * 어문저작물 116개, 사진저작물 316개, 영상저작물 168개

(단위:건)

구분	합계	20**	20**	20**
합계	600	150	250	200
어문저작물	180	50	70	60
사진저작물	210	50	100	60
영상저작물	310	50	80	180

- 세부사항(예시)

월	정기간행물 (격월)	정기간행물 (반기)	정기간행물(월)	부정기간행물
1월	정책동향/간행지 ('○○년 1~2월)	분야별 기준 및 사례집 (6월)		-단행본 · 길라잡이 · 함께 알아보는 이야기 · 전문가가 알려주는 ○○ · 한국형 분류체계 사용자 지침서 · 사용서비스 · 일반 현황 및 제도 설명회 · 기준 및 심사사례집 · 쉽게 풀어쓴 제도 · ○○○○년 통계지표 · 청구 현황 외 발행 예정인 단행본
2월			평가 결과 보고서	
3월	정책동향/간행지 ('○○년 3~4월)		○○년 통계지표	
4월			적정성 평가결과 보고서	
5월	정책동향/간행지 ('○○년 5~6월)		○○년 기관 서비스 사후관리 ○○년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	
6월			○○년 평가 길잡이 ○○년 비용 통계지표	
7월	정책동향/간행지 ('○○년 7~8월)	분야별 기준 및 사례집 (12월)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지침(7월판)	
8월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9월	정책동향/간행지 ('○○년 9~10월)	분야별 기준 및 사례집 (12월)	적정성평가결과보고서 정보 통계집	
10월			2018년 통계연보	
11월	정책동향/간행지 ('○○년 11~12월)		○○ 적정성평가 보고서	
12월				

□ **공공저작물 개방현황**

- 기관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
  -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방
  - 총 ○○○개('○○.○월 기준)
- 공공누리유형 적용을 통한 개방
  - 공공누리 제1유형(상업적이용, 변형 가능) 8개 분야 개방 예상

III. 주요 추진계획

□ **저작재산권 확보**

- 저작재산권 전부 확보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표준계약서(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포함) 작성
  - 저작권 양도계약서 표준서식에 대한 법률적 검토 완료('○○.○월)
  - 표준계약서 실무 적용을 위한 계약담당부서(○○부)대상 협조 요청
- 기존 계약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의 권리관계 파악

*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개방지원서비스 신청을 통해 계약서 검토 및 권리확인 예정

□ **공공저작물 관리**

- 연간 관리대상 공공저작물 데이터베이스 형태 구축 및 관리
  - 부서별 정기적 발간 공공저작물(어문/사진/영상저작물) 보유현황 조사(전 부서)

  ※ ○○부(계약현황), ○○부(발간 목록), ○○부(영상촬영현황)를 통해 공공저작물 목록 누락여부 확인

  * 공공누리 제도 도입 이전의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 분류 없이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및 보유 정도, 저작자 등의 현황파악은 연도별로 순차적 진행 예정
- 올해 신규 공공저작물 발간 이후 목록 관리

□ **공공저작물 제공**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지침에 따른 홈페이지 저작권정책 게시

[저작권정책 주요내용]

-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안내
  - 공공누리 제1~4유형 이미지 및 이용 범위
  - 오프라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안내
- 공공저작물 이용에 따른 출처표시 안내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표시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현황 변경 시 즉시 반영
- 기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제정·시행 이후 부서별 홈페이지 게시물 작성 시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하도록 안내(전 부서)

□ **공공저작물 관리 및 개방 관련 교육계획**

- 한국문화정보원 주관, '○○년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 및 연수과정 참석
- 공공저작물 제공 및 관리관련 전 직원대상 교육 진행
  - 공공저작물 관리 및 제공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을 통해 직원 인식 제고

  * 각 부서별 담당자 대상으로 저작권법 관련 전문가 초빙 교육 예정('○○년 ○월)

□ **공공누리 미부착 공공저작물에 대한 개방 계획**

- 계약담당부서(○○부)의 협조 및 점진적 개방 확대
  - 공공저작물 저작권 양도계약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체결
  - 기타 유형의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법률적 검토 필요

  * 기타 유형 : 그림, 건축도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

  *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건의 경우 「기재부 계약예규」준수

  *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법률지원서비스 신청을 통한 계약서 검토 및 권리확인 추진 예정
- 공공누리 제2~4유형 저작물, 자유이용 불가 저작물의 한국저작권위원회저작권 등록을 위한 예산편성 필요

□ **공공저작물 관리를 위한 기타 업무 계획**

- 한국문화정보원 주관,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서비스 결과에 따라 개선사항 도출
  -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경우, 한국문화정보원 신탁관리 서비스 의뢰 등 타 기관과의 연계 검토

□ **향후 추진일정**

내 용		○월	○월	○월	○월
저작재산권 확보	표준계약서 작성				
	계약서 검토 및 권리관계 파악				
공공저작물 관리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축				
	업무협조 요청				
공공저작물 제공	저작권정책 수립 및 게시				
	공공누리 마크 부착				
교육 및 연수	공공저작물 관련 교육 참석				
	내부 교육				

저작물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 표준(안)

※ 저작재산권 양도 취지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2014. 07. 01.부터 시행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13. 10. 31.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확보한 공공저작물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변형하여 영리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적인 취지에 따라 □□(기관명)은/는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산출물을 □□(사업명) 수행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받아 국민의 공공정보 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창조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하더라도 동일성유지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기관명)와 △△(용역수행자)(이하 '양도자'라 한다)는 양자가 체결한 □□(사업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한다.

□ **저작물 표시**

저작물명 :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

□ **양수자**

기관명 :

주소 :

□ **양도자**

가. 사업 책임자(대표자)

기관(개인)명 : (인)

소속 :

대표주소 및 연락처 :

나. 참여 인력

번호	이 름 (한자)	소 속	주 소	대상 저작물 상세정보	동의 확인
1					
2					
3					

※ "대상저작물 상세정보"에는 실제 집필에 참여한 부분을 구체적(분야, 페이지 등)으로 표시

□ **계약 확약사항**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는 그 소속 참여인력에게 이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기관명)는 사업책임자(공동수급체일 경우 그 대표자)와 그 소속 참여인력이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저작권의 양도 내용**

제1조(공통) ① '양도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양도자'가 제작한 저작물 (보고서, 사진, 영상물, 음향, 일러스트, 도감, 공모전 입상작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및 2차 저작물 작성권을 □□(기관명)에게 양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는 본 계약상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2조(확인 및 보증) '양도자'가 본 □□(사업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기관명)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3조(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 '양도자'는 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이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기관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자'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는 등 일체의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영상저작물 특례)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이 영상저작물인 경우 특약이 없는 경우 저작권법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등에 따른 영상저작물특례를 준용한다.

제5조(초상권)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6조(저작인격권 유보) □□(기관명)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사업명)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된다.

제7조(저작인접권) '양도자'는 본 □□(사업명)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에 실연자가 있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의 양도에 대하여 저작인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가 방송사업자의 실연자 및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하여 보상해야 할 경우 전부 보상했음을 확인한다.

제8조(저작자의 권리변동사항) '양도자'는 본 계약 이전에 위 저작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였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이용허락을 한 사실이 있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9조(분쟁해결 및 관할법원)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양도자'와 □□(기관명)는 제소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조정에 이견이 있어,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양도자' 또는 □□(기관명)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절차, 회사정리,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에 따라 별도로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 상당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저작물의 내용에 심각한 하자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저작권을 양수하는 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② 계약의 해제에 대한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저작권 표준계약서(4종)] 참고하여 사용 가능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 정보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인)

초상 이용 동의서

본인은 ○○○○○○을 비롯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기타 간행물 등에 본인의 초상이 도화, 사진, 영상 등의 매체를 통해 복제, 배포, 공중송신,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개되거나 사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사용된 콘텐츠에 공공누리 제○유형을 적용하여 개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인)
(관 계)
(연락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소속, 성명, 관계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등 동의 필요),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초상 공개·사용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기관명 귀중

저작권정책 표준(안)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기관명)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 표시 - 변형 가능 - 상업적 이용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해당 공공기관명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2023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 공마루)’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www.주소.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부서) 이름, 연락처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부서) 이름, 연락처

[공공저작물 권리정보 메타데이터 작성 예시]

저작물명	유형	언어	제작일		계약서	제작권자		공동저작자	저작인접권자	기존 공개유형	최종 공개유형	저작물상	비보호 저작물	업무상 저작물	상업적 이용허락	저작재권							공동저작동의	유효기간		초상권
			제작일	공표일		저작권자명	소속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		저작권 만료일	개인상 유효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8경	사진	한국어	2020-01-01	2020-01-02	유	○○○	○○군	-	-	미부착	제1유형	저작물	보호저작물	○	상업적 이용가능	○	○	○	○	○	○	○	-	2090-01-02	-	-

2. 참고자료

자유이용 예외사유의 해석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 헌법의 기본질서의 유지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의 의미
- 국방이나 안보에 관한 비밀정보 등이 어떤 사유로든 잘못 공개된 경우와 같이 그 저작물의 활용 또는 보급이 위와 같은 의미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작성된 국방부의 보도자료 등은 제외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각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개인정보는 제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6다15922 판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상 비밀'의 의미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 또는 비밀성)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관리성)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정보로 해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뉴스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우려에 대한 대응

이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호크마)

1. 개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들이 홈페이지에 뉴스 기사나 영상을 그대로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뉴스저작물의 이용 원칙을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2.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자

뉴스저작물이라는 용어는 저작권법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시사보도 · 여론형성 · 정보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 방송 또는 인터넷 매체에 보도된 기사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입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 안내문 참조).

뉴스저작물은 실제로 기자가 작성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자가 언론사에 소속되어 언론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작성한 후 언론사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로서 언론사가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조[1]).
따라서 통상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언론사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저작권법 제7조 제5호[2]) 언론사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1)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3. 뉴스저작물의 이용방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는 경우 저작권침해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뉴스를 이용하고자 언론사와 개별적으로 이용허락 협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을 하여 침해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홈페이지에 뉴스저작물을 소개 또는 게시하는 경우

웹사이트의 이름과 URL만 게시하는 방식의 단순링크(Simple Link)와 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저작물의 이름과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고 그 저작물이 존재하는 세부적인 페이지에 바로 연결시키는 직접링크(Deep Link)는 보통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홈페이지에서 뉴스저작물을 그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 자체를 게시할 것이 아니라 단순링크나 직접링크 방식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나. 연구보고서 등에 뉴스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용된 내용과 분량, 뉴스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가 정당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면 언론사의 이용허락을 얻지 않아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는 경우

보다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뉴스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면 링크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만으로는 한계가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언론사나 저작권신탁단체로부터 이용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주요 언론사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뉴스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고, 목적과 이용자 수에 따라 다른 조건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기관 퇴직자의 퇴직 이후'연구주제'의 이용범위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

이길연 변호사(법률사무소 호크마)

1. 개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중 일부는 보안각서, 임용계약서, 위촉계약서 등의 형식으로 연구원과의 권리의무 관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원이 퇴직하는 경우 종전 연구 결과물을 어느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용인해야 하는지 문제가 되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래에서는 A연구기관의 보안각서와 임용계약서, B연구기관의 비상임연구원위촉계약서를 대상으로 서술하겠습니다.

2. A연구기관의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redacted]

1. 본인 및 당사 직원은 [redacted]와 계약한 위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의 제반보안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 상 대내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귀 [redacted]의 승인 없이 정보 및 자료를 제공 또는 대여하지 않겠습니다.

2. 만약 보완 대책을 소홀히 하거나 이행치 않아서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redacted]의 어떠한 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A연구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위 보안각서[1]는 발주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안 유지를 위한 책임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이에 따라 A연구기관은 당해 용역 사업에 참여하는 직원, 연구원,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보안 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비단 퇴직 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 용역사업 착수 시부터 완료 이후까지 보안 유지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A연구기관은 참여자들로부터 보안각서(또는 비밀유지계약서 등 명칭 불문)를 받는다거나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제한 조치 등을 통해 항시적으로 보안유지를 위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A연구원이 제공한 다른 보안각서의 경우에도 대체로 이와 비슷한 양식과 내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A연구기관의 임용계약서

6. 피임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이익을 위하여 연구원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재직 혹은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 재직 중에는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활동이나 타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라. 업무수행에 있어 임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A연구기관의 임용계약서 제6조 나항은 「재직 혹은 퇴직 후에도 연구원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연구기관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저작물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닙니다. 위 규정은 A연구기관의 영업적, 기술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연구원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에 공개한 것이 A연구기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혹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점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되므로 영업적, 기술적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접근 제한, 비밀유지서약 등의 방법으로 명실상부하게 비밀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퇴직한 직원이 A연구기관에서 지득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그것이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에 의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2]

4. B연구기관의 비상임연구원위촉계약서

5. 피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연구원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부여된 연구과제나 기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해촉 후에도 연구원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나. 연구원에서 부여한 연구과제에 대한 실적을 위촉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계약이 만료되더라도 피위촉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수정·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
라. 위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적조치 등 연구원의 여하한 제재 조치도 감수한다.

2) 경우에 따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B연구기관의 비상임연구원위촉계약서 제5조 다항은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명칭은 「위촉계약서」이지만 비상임연구원은 실질적으로 B연구기관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 비상임연구원이 작성한 성과물이 B연구기관의 기획 하에 작성되어 B연구기관의 명의로 공표된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는 업무상저작물로서 B연구기관이 원시적인 저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계약서 제5조 다항 전단의 「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여서는 아니되며」라는 표현은 공표권이 B연구기관에 속한다는 업무상저작물[3]의 당연한 특징을 선언하는 것으로, 후단의 「연구보고서의 판권과 본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되는 소유권은 연구원에 귀속된다」는 표현은 B연구기관이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이자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을 전부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판권', '소유권' 등 저작권과 관련하여서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위 계약서 제5조 다항은 비상임연구원이 작성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로서 B연구기관에게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힌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제5조 다항 후단은 「연구보고서나 기타 연구결과물에 대한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과 여타의 지적재산권 전부는 원시적으로 연구원에 귀속된다」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제5조 가항 후단의 「해촉 후에도 연구원에서 알게 된 비밀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퇴직 후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것으로 저작권과 직접 관련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전항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내용을 확인해 두면 되겠습니다.

3)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22.〉

5. 퇴직 연구원의 저작물 이용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

보통 연구원들이 연구원에 재직 중 작성한 연구보고서 등의 저작권은 업무상저작물로서 소속 연구원에 원시적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높고, 연구원이 원시적인 저작자라는 것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전부를 저작물의 완성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 작업을 한 연구원은 적어도 저작권에 관한 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원이 퇴직 후 자신이 관여했던 저작물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규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ⅰ) 먼저 해당 저작물의 작성에 자신이 관여했던 사실을 소개, 홍보하는 정도의 행위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이용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권 침해를 논하기 어렵고, (ⅱ)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용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28조[4]), (ⅲ)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는 복제를 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30조[5]), (ⅳ) 그밖에도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인 연구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6]에는 허락 없는 이용행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난 정도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만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개별 행위에 따라 달리 평가될 여지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4)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5)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3. FAQ

Q.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을 명시된 이용조건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은 명시된 이용조건 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용조건 외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저작물을 제공하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Q.	**민간에서 공공누리를 부착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까요?**

공공누리 제도는 공공저작물에 한정합니다. 민간 저작물의 경우 CCL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공공누리를 적용하여 변형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 일부 제한을 할 경우, 이용자(국민)에게 항의가 들어오면 다시 제1유형으로 바꿔주어야 할까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라면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등이 자유이용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절차를 거쳐 기타유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를 바꿔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정책상으로는 제1유형으로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만 공공기관 해당 담당자로서는 1유형으로 공개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개방하여 창조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공누리 제2유형이나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취지와는 차이가 있어 제1유형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것 자체가 기업의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방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Q.	**이용자가 공공누리에 올라와 있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출처표시는 공공누리 마크로 표시해야 하는 건가요, 텍스트로 표시하면 되는 건가요?**

이용자는 출처표시를 텍스트로 해 주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 명시를 위하여 제공자(저작권자)가 붙이는 것입니다.

Q.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어도 기관에 문의하여 제공을 요청하는 편인데,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면 제공 기관에 문의할 필요 없이 부착된 유형에 따라서 이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별도의 제공 요청을 할 필요 없이 이용하셔도 됩니다.

Q.	**기관들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저작물마다 공공누리를 부착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우선은 앞으로 생성될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재산권 확보와 공공누리 부착을 진행하면서, 순차적으로 기존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 부착을 이루어나가면 될 것입니다.

Q.	**소식지를 만들어서 회원동정을 싣고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고 회원들 사진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일일이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뿐만 아니라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자유이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Q.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을 때 저작인격권도 양도받을 수 있을까요?**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이나,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나 성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자에게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Q.	**블로그나 SNS에도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이 적용되나요?**

공식블로그나 SNS를 운영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는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은 대표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 및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에도 적용됩니다.

Q.	**기존까지는 기관에서 개발한 교수학습 자료를 일선에 보급하기 위하여 출판사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출판 설정을 하여 보급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출판권 설정 및 기관과의 별도 계약 없이 출판사에서 바로 출판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국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교수학습 자료 역시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인 경우에 제3자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행위는 제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의 오프라인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출판·발행하여 소정의 실비 수준으로 직접 판매하거나, 민간을 통해 판매대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이용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재이용허락을 할 수 있나요?**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동일한 유형을 부착하여 다시 제공하는 '재이용허락'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표시를 하면 다른 이용자들은 표시된 출처에서 개별적인 이용만이 가능합니다.

Q.	**제작시기가 오래 지난 자료는 일일이 저작자들을 찾아 양도계약서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하도록 하면 되는 건가요?**

서면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자 확인이 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예전자료이더라도 양도계약서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도계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보통 공공기관의 문서 보존 기한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난 계약서들은 대부분 폐기되어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권리 확인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다면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개방지원센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 1670-0052)

Q.	**사실 1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구매나 발주할 경우, 계약서는 따로 만들지 않고 구두로만 동의를 받은 후 원고나 사진 등을 받아서 기관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원고나 사진 등의 저작권은 기관과 창작자 중에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결국 모든 업무 시 계약서를 써야하는 건가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작물에 대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권리관계가 명확해지지만, 이 경우는 그 저작물을 구매하여 기관 홈페이지에 이용하겠다는 것이지 저작권까지 양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제공 업체가 저작권을 양도하게 되면 상업적 이용이나 변경도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저작권을 소액에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공누리 표시가 없는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공지하셔야 합니다. 명확한 권리관계를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이용허락동의를 구하셔야 최소한의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Q.	**보통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때 연구윤리에 따라 도표, 그래프, 이미지, 인용구 등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데,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곳은 기관이라도 그 인용한 자료는 해당 저작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공공데이터법 또한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구보고서의 경우에도 인용된 사진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가 있다면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공공누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Q.	**공공기관의 출판물은 공공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연구소 등에서 판매하는 발간물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연구소의 발간물은 출판사와 계약 시 관례적으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향후 출판사의 권리인 출판권을 침해할 수 있지만, 연구소에서 자체 출판하는 저작물은 출판권 등 제 3자의 권리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또한 유료로 판매하는 행위 때문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구기관의 연구 관련 출판물 발간이 주 업무이고, 현재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 발간물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기관의 경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속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연구보고서의 경우 기관에서 창작한 업무상 저작물이지만, 실제 발간하는 과정에서 삽입되는 표지디자인의 저작권자는 따로 있는데, 이러한 발간물에 대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적용해도 될까요?**

먼저, 표지디자인에 대한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이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를 통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 동의가 어려울 경우, 표지디자인이 적용되기 전의 연구보고서 형태(한글, PDF파일 등)로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해설서

2016년 2월 16일 초판 1쇄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0043호)
2017년 8월 16일 초판 2쇄 발행
2019년 2월 8일 2판 1쇄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0006호)
2020년 12월 8일 2판 2쇄 발행
2023년 4월 24일 3판 1쇄 발행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2-0054호)
2024년 1월 1일 4판 1쇄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8층
TEL. 1670-0052

디자인 (주)디자인위드

- 본 해설서는 공공누리 누리집(http://www.kogl.or.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 누리집 → 개방지원센터 → 자료실·강의실
- 본 해설서에 수록된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위 발행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꼴명(저작권자명) : 나눔스퀘어(네이버㈜), KoPubWorld돋움체(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해설서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